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5. 21 선고 2019가단537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7. 7 선고 2019나415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5. 21 선고 2019가단537 판결

전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21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잡종지 97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가" 부분 14.4㎡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구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2. 무변론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이규영

별지